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 1197 호 2019. 9. 26.(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09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

안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회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20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9.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52-3	울산광역시 북구	성내3길 18	2019-09-26	예로부터전해져내려오고현재도사용중인마을이름으로누구나쉽게알수있는이름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1-05
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D77 B 3L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5길 35	2019-09-26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1
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D21 B6L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29길 22	2019-09-26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4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73-1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20	2019-09-26	관문성으로가는길이라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